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바로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12

2015-12호



■ 의정회고

- 반갑습니다, 의원님!!
김성진 전(前) 도의원 인터뷰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서울시의회 지속가능한 중소상인 살리기 등을 위한 포론희 계획 등 3건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 3건

■ 최근 기초의회 제·개정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상인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4건

■ 대법원 판례 정보

- 공직선거법위반 판례 등 2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의정 회 고

- ▶ 반갑습니다, 의원님!! - 김성진 전(前) 도의원 인터뷰 (5)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 서울시의회 지속가능한 중소상인 살리기 등을 위한 토론회 개최 (27)
- ▶ 경기도의회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역대 최대규모 해제 패거 (29)
- ▶ 전북도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토론회 개최 (31)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34)
- ▶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38)
- ▶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40)

최근 기초의회 제 · 개정 조례

- ▶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43)
- ▶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45)
- ▶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47)





최근 제·개정 법령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54)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56)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58)
- ▶ 주거기본법 (60)

대법원 판례 정보

- ▶ 공직선거법위반 [공2013하,2282] (63)
- ▶ 정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공2014상,739]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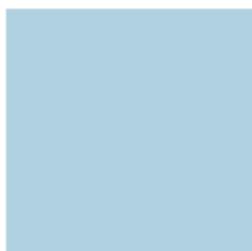




▶ 기획 시리즈

의정 회 고 (8)

「반갑습니다, 의원님!! - 김성진 전(前) 도의원」



반갑습니다, 의원님 !!

충청남도의회 김성진 의원 (제4대 도의원)



- ▶ 1942년 생
- ▶ 서산 중앙고등학교 졸업,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 ▶ 전 안흥 새마을금고 이사장
- ▶ 전 제4대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 ▶ 전 전국 도의회 농림수산 위원장 협의회장
- ▶ 전 14대 서산수산업협동조합장
- ▶ 전 충청남도 의정회장
- ▶ 현 국립태안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위원장
- ▶ 현 17대 서산수산업협동조합장

〈프롤로그 prologue〉 “정치(政治)의 요체(要諦)는 신의(信義)의 확립이다”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 끝자락에 필자는 제4대 충남도의회 농림수산 위원장을 역임한 김성진 전 의원을 만났다. 현재 제17대 서산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희수(喜壽)를 바라보는 나이지만 도무지 나이를 가늠 할 수 없을 만큼 젊음이 넘쳐흘렀다.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에 10평 남짓의 잘 꾸며진 그의 사무실 한편에 걸려 있는 액자가 필자의 눈을 사로잡았다. 서예를 하는 선배가 조합장 당선 을 축하해 써준 民無信不立(민무신불립)이다. 국민의 신임을 잃으면 나라의 정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공자님 말씀으로 정치의 요체(要諦)는 신의(信義)의 확립이라는 경구(警句)다.

5.16이후 30년간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제4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4년의 임기를 주로 농어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그는 당시 자민련 돌풍으로 기초단체장 선거에 낙선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2000년 충남도 수산조정위원으로 다음해 제14대 서산수협조합장으로 2004년 충남도 의정회장, 2008년 국립태안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위원장으로 각각 활동을 하다가 현재에 5천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리더가 됐다. 그가 이렇게 좌절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욕구 불만을 참고 견디며 주변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정회고에서 그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한계를 느꼈다”며 “지방자치 활성화 하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 의원들에게 “지방자치가 갖는 국민의 요구와 바람은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디딤돌이 되리라는 것과 우리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살림살이를 논의해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앞당기는데 그 참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안희정 지사의 리더십에 높은 점수를 주는 한편 지방의회와의 상생 발전에는 뜻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목적인 국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의회와도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영 의장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큰 마찰이나 분쟁 없이 원만하게 의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의회의 수장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그는 충남도 공직자들의 청렴도 하락을 우려하며 우리나라 임금이 기근이 들었을 때 왕이 백성들과 운하를 뚫다. 장단지의 털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술선수빚했다며 즐풍목우(櫛風沐雨) 정신을 강조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 청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란이 닳쳤을 때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성웅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는 그는 평소 즐겨 읽었던 ‘한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신국가론’을 소개하며 애국애족을 강조했다.

<인터뷰>

회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74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5천명이 넘는 조합원의 리더로 왕성한 경제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제4대 충남도의회 김성진(金成振, 74세) 의원을 본지가 만났다. 필자는 그가 4년간 도의회 농림수산 위원장 및 전국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얻은 소중한 의정활동의 교훈 등을 인터뷰를 통해 담아보았다. - 편집자 주

- 무척 건강한 모습이다. 건강의 비결은?

건강을 위해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다. 다만, 주말이면 빠짐없이 마을 뒷산을 산책한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터득한 나만의 건강법이 있다면 절대 분노의 마음(火)을 갖지 않는 것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火라는 것은 한번 내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또 火를 내면 낼수록 내 몸과 마음은 병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분노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무작정 분노를 억압하다 보니 화병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 상황을 피한다. 최소한 1분의 여유만 있다면 엄청난 분노의 불덩이를 자신과 타인에게 던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만 잘해도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고요하고 평온해진다.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즉, 하룻밤 7-8 시간의 수면을 취한다. 규칙적인 아침식사를 한다. 저녁 늦게 간식을 하지 않는다. 음주는 적당히 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등이다.

- 거주하고 있는 곳과 슬하에 자녀는?

현재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1길에 위치한 상가(마트와 낚시용품점)가

말린 단독주택에서 처와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다. 자식은 3남 2녀를 두었는데 모두 출가해 국가에 공헌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 요즈음 무슨 일을 하고 있나?

4대 도의원을 마치고 한동안 정치를 뜻을 접지 못하고 조직 관리를 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자민련 열풍에 집권당(민자당) 소속으로 출마한 모든 선거에서 참패를 했다. 그 와중에 2001년 3월 제14대 서산수산업협동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서산수협은 부채가 100억 원이 넘어 파산위기에 봉착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내게 도전의 기회를 주게 됐다. 내가 도의원으로 재직 시 전국 도의회 농림수산 위원장 협의회장을 역임한 경력과 2000년 충남도 수산조정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당선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러한 인연으로 지난해 3월 제17대 서산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 또다시 출마해 당선, 조합원 5300명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하고 있다.

- 서산수산업협동조합을 소개한다면?

서산수협은 서산시, 태안군을 아우르는 어업인의 협동단체로써 풍부한 수산물을 바탕으로 50개 어촌계로 구성된 협동조직으로 어업 기술 및 금융의 편의를 제공해 지역 어업인 및 수산물 가공업자들의 경제, 사회적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충남도 태안군에 본소, 소원지점, 안흥지점 등이 있고, 서산시에 서산지점이, 중부지점, 대산지점이 있다.

- 회수를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하기로 소문난 조합장 선거에서 2번씩(14대, 17대)이나 당선 됐다. 그렇다면 조합원들로부터

터 신뢰를 받았다는 것인데, 제임 중 신뢰를 받을 만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2001년 당시 서산수협은 105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경영혁신 없이는 조합을 지탱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을 이룬다고 해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본자식이 된 수협은 일절 고정자산의 투자가 안 된다는 게 당시 법이었기 때문이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조합원들은 나의 정치력을 높이 평가했다. 경쟁 상대방은 “전국 도의회 농수산위원회협의회 회장 출신이 뭇 하러 나왔나?”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1년에 1억 원씩 흑자를 낸다고 해도 105년이 걸리는데 무슨 재주로 흑자 전환을 장담하나?”라고 날을 세워 공격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나를 선택했다.

그런데 내게 흑자전환 공약을 실현할 기회가 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동안 동해안에서만 잡히던 오징어가 8월에 서해 안흥항으로 물러와 위판 사업이 활기를 찾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어선에 출고할 기름과 얼음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얼음도 못주는 조합장이 위판 수수료를 5%나 받는다고 아우성이었다. 그래서 내륙에서 얼음을 조달 받았는데 얼음이 안흥항에 도착하면 거의 녹아 내려 뼈대만 남았다. 그렇다보니 뼈대얼음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그래서 나는 얼음공장 증설을 위해 진드기 조합장이라는 소리 들으며 중앙회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들었다. 그래서 도의원 경험으로 이 문제를 국회로 가져갔다. 결국 국회를 통해 예산 20억 원을 받아 얼음문제를 해결했다.

또 유류탱크 용량이 2,000드럼에 불과해 성어기에는 2일분의 공급량 밖에 되지않아 2,000드럼가량 증설이 절실했다. 그래서 수협중앙회가 4개 정유사로부터 유류입찰을 받으며 61억 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기름 팔

아 직자난 곳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물론 중앙회는 거절했고, 나는 정유회사(엘지)와 직접거래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앙회가 승인 거절했지만 한 달여 동안 실랑이 끝에 2,000드럼 증설 허락을 받아 엘지가 증설공사를 했고, 이 시설은 5년 후 기부채납 받았다.

이밖에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시한 연장운동도 전개해 관철시켰다.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2005년 6월 30일 까지만 면세가 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까지 25%부과 되며 2006년 1월 1일부터 전액 과세토록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었다. 이에

내가 주축이 돼 현재의 농어촌 실정으로는 농어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바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시한을 2010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을 위한 면세유류공급시한연장 운동전개 했다. 당시 정부가 WTO/DDA협상에 의한 농어업 보조금 감축문제와 타 산업과의 세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지만 결국 관철시켰다.

이렇게 나는 대 내외적 경제사업 활성화로 부채 청산 50여억 부채 갚고 4년의 제14대 조합장임기를 마쳤다.

- 정치입문 배경이 궁금하다. 왜 당시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도의원을 하려했나?

도의원을 하기 전에 새마을 금고를 설립해 9년을 운영했다. 또 전두환 대통령시절에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선출됐으며 이후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자문기구이며 범민족적 통일기구로 발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나름대로 지방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지역 주민들이 나서 소외된 농촌을 대변하라며 부활된 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권유했다. 정치적 꿈을 키워왔던 나는 비록 무보수였지만 도의원 경력이 앞으로의 정치적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출마를 결심했다.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본격적인 정치계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이다.

- 재선을 하지 못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

사실 도의원을 3선 이상 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자민련(김종필 총재) 바람이 충청지역을 흔들어 놓았다. 유성관광호텔에서 자민련 김종필 총재 후원의 밤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자민련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박중배 지사가 함께하자며 민자당으로 기초단체장 출마를 간곡하게 권해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당시 자민련 바람은 폭풍과도 같았다. 의정활동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었다. 주민들은 이름 몰라도 3번(자민련)만 찍었다. 사실 민자당 김윤환 사무총장이 “충청도 사람 합 바지라”고 폄훼하는 바람에 지역감정의 골이 깊었다.

- 이력을 보니 1993년에는 전국 도의회 농림수산 위원장 협의회장을 역임했고 2004년에는 충남도의정회장을 역임하는 등 매우 화려하다. 이 직책에서는 각각 무엇을 했나?



도의원에 당선돼 농림수산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국농협을 다니며 강의를 했다. 그런데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래서 내가 전국 도의회 농림수산 위원회협의회 결성 초대위원장을 맞게 됐다.

협의회는 추곡수매가를 국회가 결정할 때 농민과 함께 투쟁하면서 농민입장을 대변, 농민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재해 시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지원이 어려웠을 때 지원근거 마련했다. 흑서피해를 비롯해 한전의 갑작스런 정전으로 닭 폐사 시 지원근거를 만들었다.

2007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충남의정회 6-7대 회장(2년 임기)을 역임했다. 이때는 안면도 꽃박람회와 대백제전 홍보에 매진했다. 또 안희정 지사 부임 직후에는 1대부터 9대까지 의정활동에 대한 통합의정백서를 발간해 전달, 호평을 받았다.



- 2008년 국립태안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위원장으로 활동,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2007년 5월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근 해역에서 고려청자 총 2만 3000여 점을 건져 올린 데 이어 7월에는 마도 근해에서 연판문대접 등 고려청자 515점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과 같이 태안에도 해양유물전시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08년 국립태안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했다.

문화재청은 본청 소속기관으로 '태안 해양문화재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중앙 관련부처건 이전으로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지방 연구소로 건립될 처지에 있다.

주민들은 태안반도 해상 전역이 고려청자가 묻혀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에 걸친 탐사와 발굴로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 지휘할 연구소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조운선은 국가에 수납하는 조세미(租稅米)를 지방의 창고에서 경창(京倉)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한 선박이다.

선박 내부에서 목간 60여 점도 함께 출수됐다. 목간 대부분에는 발신처인 나주와 수신처인 광흥장을 뜻하는 '나주광흥창'이 적혀있다.

이는 전남 나주 영산창에서 거둬들인 세곡 또는 공납품을 관리의 녹봉을 관리하던 조선 시대 국가 기관인 광흥창으로 옮기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태안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을 위한 위원회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정치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무보수 도의원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었나?

처음에는 왜했나 무척 후회를 했다.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강력한 선거법 없어 지역구민의 애경사 경조비가 상상을 넘어 정도였다. 행사를 한번 치르면 30만원이 든다. 도의원 선거를 치른 것보다 의정 활동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나의 지역구는 4개면 농촌 시골이라 음식 먹을 곳이 없어 그나마 비용이 적게 들었다. 나는 정당(여당)조직 이용했다. 면단위 협의회장과 관리장들의 사랑방모임을 이용했다.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지역의 한 모임에서 야유회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술이나 한 박스 보내주겠다”고 하자 “의원님! 술은 많이 있어요”라며 돈 봉투를 요구했다.

이렇다보니 무보수 명예직으로 당시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의원들 상당

수는 충남도의정회 회비 낼 돈이 없어 의정회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70세 이상 의정회원 가운데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보조비(월 50-60만원)를 지급해줬으면 한다”고 건의 했다. 하지만 상위법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헌정회는 '대한민국 헌정회육성법'에 따라 연로회원지원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헌정회 예산으로 84억 5100만원을 편성, 보조금 형태로 집행했다. 이 가운데 85%가량인 72억 800만원은 연로회원 지원금이다.

헌정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5년 월평균 410여명이 월 120만원에 달하는 연로회원금을 '65세 이상 연로회원'에 대한 생계보호'란 명목으로 수령했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 활성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국회나 지방의회는 다 같은 대의기관인데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것은 민주적이지 않은 것이다. 연 2억이면 70세 이상 생활형편이 어려운 도의원에게 생활보조금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 도의원시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1991년 충청남도 제4대 도의원으로 당선 1995년까지 활동했다. 농수산위원장을 할 때 도청을 홍성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지금의 충남도청이 내포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라 자부한다.

또 농촌진흥원이 대전에 있었는데 농민 교육장이 부실해 농어민회관을

덕산에 짓자고 발의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 비록 요구가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특히 충남도휴양림사업소를 안면도에 유치하기 위해 활동했던 것이 보람이고 자랑스럽다. 사실 도유림은 보령시가 태안군 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세계적인 안면송이 태안 안면도에 있어 안면송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관리 유지시킬 사업소가 인근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행정 지도선을 타고 안면도로 갔는데, 이 배가 어선을 개조한 실로 조잡하고 초라했다.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행정 지도선부터 바뀌야한다”고 주장해 휴양림사업소 안면도 유치와 함께 ‘어업지도선’도 현대화 할 수 있었다.

- 도의원으로 4대 도의회를 평가한다면?

비록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당시 도의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집행부를 견제 많이 했다.

특히 현재 충남도청이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내포에 새롭게 등지를 틀게 하는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제4대 도의회가 도청 이전을 위해 도청 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정활동을 활발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자부한다.

또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백제 문화유적이 최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당시 의원들은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문화권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된 것을 보면서 늘 상 우리의 백제문화권 개발이 언젠가는 훌륭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뜨거운 소망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백제 문화권개발사업을 그 동안 추진해 오면서 기본적으로 역사와 자연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살아 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해 나

가자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중앙과 긴밀히 협조를 해 왔다.

이렇게 볼 때 제4대 충청남도의회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

- 도의원을 마치고 아쉬움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특정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다. 중앙정부에 예측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한계를 느꼈다. 지방자치 활성화 하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현재 중앙정부는 귀찮고 힘든 사업은 지방으로 위임하고 정작 알짜 사업은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다. 내가 알기로 서산 대산공단은 국세가 4조인 반면 지방세는 고작 400여원이라고 한다. 대산공단은 화학단지라 주민들이 환경적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곳 주민을 위한 재정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

최근 안희정 지사가 담론을 통해 전기요금 차등화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공감해 간다. 그러나 문제는 전기요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산공단에서 생산 되는 모든 공산품의 가격도 최소한 물류비용만큼은 싸야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원 모두가 안 지사에게 힘을 실어 줘야한다. 안 지사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살아오면서 욕구불만에 따른 좌절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미 모두(冒頭)에서 말했듯이 욕구 불만을 참고 견디어 왔다. 인간에게

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매우 크다.

내가 도의원에 출마한 것도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였다. 도의원으로 당선 된 후 열심히 활동해 주위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게 됐을 때의 쾌감은 상상이상 이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 했을 때의 좌절감은 말로는 표현이 어려웠다. 절치부심의 한을 품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참고 견뎠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무작정 참고 기다렸던 것은 아니었다. “내가 낙선한 것은 자민련의 돌풍 때문” 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기 때문에 좌절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다. 또 목표를 바꾸는 즉, “쟁 대신 닭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협조합장에 도전한 것이 주효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

국난이 닦쳤을 때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성웅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장군을 존경한다. 이순신은 한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의 한 표상이다. 그런 추앙은 그를 수식하는 ‘성웅’ 이라는 칭호에 집약되어 있다.

‘성스럽다’ 는 표현은 그 자체로 범접할 수 없는 경지를 나타내지만, 천부적 재능과 순탄한 운명에 힘입어 그런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경과 난관을 치열한 고뇌와 노력으로 돌파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가장 거칠고 파괴적인 것은 폭력이다. 그리고 가장 거대한 형태의 폭력은 전쟁이다. 이순신은 그런 전쟁을 가장 앞장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가진 무장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돌파해야 할 역경이 다른 분야의 사람들보다 훨씬 가혹했으

리라는 예상은 자연스럽다. 실제로 그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거대한 운명을 극복하고 위업을 성취한 인간의 어떤 전범(典範)을 보여줬다고 평가할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게 됐고 그의 삶을 닮으려 노력했다.

- 추천 도서가 있다면 무엇이며 간략한 소개

감명 깊게 읽고 추천하는 책은 ‘한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신국가론’이다. 먼저 한민족의 국난 극복사(이선근 저)는 서술적으로 편집되어 있어 읽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좋다. 이 책은 우리나라 사학계의 대두(泰斗)이자 교육계의 원노인 저자가 1975년 5월 21일부터 1976년 5월 18일까지 주2회 국무회의에서 특강한 내용을 정리·보완해서 편찬한 것이다.

저자의 50여 성상 연찬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민족정기의 혈맥으로 국난극복의 슬기를 담았다.

이 책의 137페이지에는 김유신 장군이 소정방을 꾸는 대목이 있다.

황산벌에서 피의 격전을 치른 신라군은 당장(唐將) 소정방과 약속했던 기일보다 늦게 기벌포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정방은 대노해 총지휘관인 김유신 장군을 직접 문책할 수 없으니까 신라 독군(督軍)인 김문영(金文穎 - 혹은 金文水)을 군문(軍門)에서 참형하려고 형틀에 매었다.

이에 김유신 장군도 크게 노해, “대장군은 황산벌의 혈전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기일이 좀 늦었다 해 죄를 논하려고 하는가. 나는 죄 없이 육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며, 굳이 그래야 한다면 먼저 당군(唐軍)과 결전한 다음에 백제를 격파할 것이다” 하고 외쳤다.

이때 김유신 장군은 군문에 서서 철월(鐵鉞)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분개한 모습이 기록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머리털은 곳곳이 일어서서 마치 삼을 심어 놓은 것 같고, 허리에 찬

보검은 저절로 약동해 칼집에서 튀어나오려는 것 같았다” 고 서술했다.

이와 같은 김유신 장군의 기세에 위압된 소정방의 우장(右將) 동보량(童寶亮)은 소정방의 발을 밟으며, “신라 군사들의 변고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고 간언하자 소정방도 김문영의 처형을 중지시키고 풀어 주었다.

그 당시 당군의 군세가 훨씬 호대했고 증대한 판국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군의 총지휘관인 소정방에게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오히려 그를 위압한 점이라든지, ‘당군과의 일전’ 을 선언한 김유신 장군의 용맹과 주체의식(主體意識)은 고금의 역사 상 그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한편의 책은 유종근 박사의 신국가론(한국선진화연구회, 2001.11.19)이다. IMF긴급지원으로 한국 경제가 되살아난 지 4여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2001년 11월에 출간된 이 책은 그 당시 전북도지사였던 유종근 박사가 쓴 책이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도 이탈리아의 중북부와 남부의 지방자치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을 이끌어 낸 로버트 퍼트남 하버드 대학교수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이 책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본격적 언급에 앞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을 질타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각 신문사, 재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의사와 약사, 영남과 호남 등 하나같이 자기주장과 자기이익만을 생각할 뿐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 권리를 일정 정도 양보하겠다는 마음은 없다면서 우리정치가 잘못된 것이 전적으로 정치인들 탓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국민의 민주 시민 의식이 아직 선진국 국민들에 크게 미치지 못 미치며, 어찌 보면 국민들은 또한 정치권의 부조리와 편 가르기를 부추기거나 이에 동조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편승하려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말로는 지역감정이 안 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막상 투표할 때는 비전이나 정책보다는 지역감정에 따라 한다면서 계속 지적했다.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서로간의 깊은 불신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사회가 발전을 이루는 데는 공동체 문화와 신뢰나 협동 같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특정 공동체에서 개인에게는 항상 배반하는 전략이 이롭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 점차 축소되며, 사회적 신뢰가 형성돼 있는 공동체에서는 서로 협동하는 전략이 이롭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 쌓여 간다고 말한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레고리 헨더슨이 쓴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국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전통적으로 엘리트 그룹과 일반 대중 간에 매개그룹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 중간 집단의 응집과 주체성을 가로막는 문화적 장벽과 취약한 공동체적 일체감은 더 큰 공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동인으로 고양될 수 없었으며, 이런 점이 한국사회를 서구에서와 같이 다양하고 다원적인 공동체로 바꾸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말이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10가지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을 통해 국가 권력을 국민과 기업 및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 좌우명이 있다면

근면과 성실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근면과 성실을 같은 뜻으로 쓰지만 실제로는 차이점이 많다. 근면은 부지런함. 즉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인다는 쪽의 뜻에 더 가깝고, 성실성이라 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마음의 자세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근면하게 움직이더라도 남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여도 근면하다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성실함은 덜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겉으로 보

이기엔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 그 일이 잘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영국의 초상화가인 J.레이놀즈(1723.-1792.)도



“큰 재주를 가졌다면 근면은 그 재주를 더 낮게 해줄 것이며, 보통의 능력밖에 없다면 근면은 부족함을 보충해 줄 것이다” 라고 설교했다.

- 지방의원 보좌관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의회제도의 본질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의 의사를 주민전체의 의사로 간주,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기능 등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지향(志向)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추진은 지방의회의 자주 입법 확대, 즉 국가로부터의 입법권의 이양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법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정책형성 기능의 향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보좌관제는 당연하다.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특색에 걸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회제도의 본질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의 의사를 주민전체의 의사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기

능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지방운영을 지향해야한다.

-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견해

5.16이후 30년간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실현 된지 2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의원의 의정활동, 특히 예산안 승인 및 감사 등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협조를 꺼린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감시통제권을 제대로 행사 할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사무처직원의 인사권 독립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다.

- 제10대 도의회 및 김기영 의장의 리더십 평가

10대 김기영 의장의 리더십은 잘 모르겠으나 사람이 화합적이고 친화력이 있다. 현재 여소야대의 도의회는 사사건건 집행부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집행부와 큰 마찰이나 분쟁 없이 원만하게 의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수장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도정 및 안희정 지사 리더십 평가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2015년 하반기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에서 안희정 지사가 도민 10명 가운데 7명가량(66%)으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2위에 올랐다.

이는 충남이 새누리당 우세 지역이라는 점에서 보면 74%를 받아 1위를 기록한 김기현 울산시장과의 비교를 무색케 한다. 이렇게 볼 때 충남 도민

들이 안 지사에게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공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주는 백성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즉 믿음이 없이는 아무 것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다.

안 지사는 젊은 사람이어서 패기도 있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도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권 주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

안 지사가 자치분권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와의 상생 발전에는 다소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목적인 국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의회와도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후배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후배 의원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민의 어려움을 극복에 앞장서고 있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홍재표·정광섭·유익환 등 이 지역 출신 의원들이 부지런하고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선배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가 갖는 국민의 요구와 바람은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디딤돌이 되리라는 것과 우리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살림살이를 논의해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앞당기는데 그 참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늘 한마음이 되어 서로 협조하고 성원을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조화를 이루며 화합과 신뢰를 더욱 다져가야 한다.

그래야 만이 우리 충남이 더욱 알차게 가꾸어 가는 고장이 되고 번영과 성장의 결실과 보람을 도민 모두가 함께 향유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도의회가 여소야대로 집행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민의 이러한 선택은 집행부의 전횡을 견제하라는 것이지 '묻지마식' 반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위정자와 백성이 서로 간에 깊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정치는 제대로 돌아간다. 믿음의 근본이 무너졌다면 그 책임은 절대로 위정자의 몫이지, 국민의 몫은 될 수 없다.

- 도 공직자에게 하고 싶은 말



충남도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떨어졌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청렴의무 위반 시 동법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일도 잘해야 하지만 청렴해야 한다.

중국 우 임금은 봄소 삼태기와 삼을 들고 천하의 작은 강들을 큰 강으로 흘러들게 했다. 장단지에 살이 안보이고 정강이 털이 몽땅 빠져 버렸으며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비로 목욕을 하면서 나라의 자리를 정했다. 이에 즐풍목우(櫛風沐雨)라는 고사성어가 생기게 됐다.

또 중국 명(明)나라 때의 우겸(于謙)과 관련된 고사(故事) 등에서 유래된 청풍양수(淸風兩袖)는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라는 뜻으로 청렴한



관리를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특히 다산 선생께서 목민심서에 남기신 말씀 가운데 ‘위생어렵 신생어
충’ (威生於廉 信生於忠)이 있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
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
는 것이다.

대담·정리 :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도

서울시의회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살리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12월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법원 판결과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부도 인정한 대형마트 규제의 효과와 경제민주화 정책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살리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정책과제 발전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철 전국울살리기본부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이 각각 발제를 했다. 또한 김진철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기획경제위원회, 비례),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장,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연맹 정책실장, 진정란 소비자유니온 준비위원장, 양창영 민변 민생경제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 ▲대형마트와 SSM의 무한 확장 규제, ▲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제도,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관련 제도개선, ▲가맹사업자와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다뤄졌다.

특히 토론자로 참여한 김진철 의원은 “상인에게 장사할 권리! 서

울특별시를 경제민주화 도시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서울 특별시의 경제민주화 정책과제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야하며 실력 있는 민생중심 정치가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상암동DMC 복합쇼핑몰을 거론하며 “대형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정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건축심의허가단계에서 반영함과 동시에 개발특혜관련 전면재검토를 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월 19일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의무휴업 적법 논란에 대해 중소기업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두 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역대 최대규모 해제 쾌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옥희, 새누리·여주1)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이끌어냈다. 따라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10년 만에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농정해양위원회는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을 위해 제304회 정례회시 「농업진흥지역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지난 11월 27일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업보호구역 전환을 담아 ‘농지법’을 개정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내 농업용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2만여 ha가 해제될 전망이며 이번 해제로 인해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 2000ha로 줄어들게 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000㎡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농지규제 완화에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여건변화 기준을 기존 2ha에서 3ha로 확대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중 5ha까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허용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원육희 위원장(새누리당, 여주1)은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경기도 농민이 염원하던 농업경제 활성화와 사유재산권 행사 보장이 가능해졌다.” 고 언급하면서 “농업SOC가 정비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농업 6차산업 육성에 따른 농촌경제와 도시자본 유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토론회 개최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권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투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자원은 정책적 수단으로, 권력은 지방분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회장)는 지난 12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광역·기초의원과 학회, 시민단체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휘석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이윤석 계명대학교 교수,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여영현 선문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노시평 서경대학교 교수,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여영현 교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비수도권 지역의 동반성장 사례연구’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현행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상 국비매칭이 어려우므로 국비 부담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그는 또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할 경우 이에 비례한 지원 규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훈 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의 발제를 통해 수

도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원과 권력이 불균형 상태로 집중되는 현상에 기인한다며 자원집중은 정책적 수단을 통해, 권력집중은 지방분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는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의 토대 위에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 상호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김광수 전북도회의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람과 돈,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토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수도권 선도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토록 과감한 지원과 비수도권 지역에 수출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등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및 관련법령 제·개정에 공동대응하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5.12.31.] [경기도조례 제5099호, 2015.12.31., 일부개정]

□ 주요목적

경기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

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기도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경기도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 도지사는 조성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조성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경기도 건축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㉓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㉔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㉕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조성 등)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13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사업관리(설계관리,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등의 사업
4.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
5.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15.12.31]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본조신설 2015.12.31.]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㉕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㉖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㉗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관리 공무원
2. 제20조에 의해 구성된 녹색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단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㉙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㉚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15.12.31.]

2.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12.31.] [강원도조례 제3970호, 2015.12.31., 제정]

□ 주요목적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도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강원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도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

4.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 우수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고용 증대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기업예로사항 파악 등 인증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고용창출 및 근로자의 복지에 노력한 도내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규정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일자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과장,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일자리 관련 분야 전문가
3.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⑤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동안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기업홍보
3. 고용환경개선 지원
4. 강원도 해외 마케팅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5. 지방세 세무조사는 「강원도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에 따라 면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6.1.30.] [경상북도조례 제3712호, 2015.12.31., 제정]

□ 주요목적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배경 요인을 지닌 학습자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북도 안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및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시책의 개발,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 교육·상담
2. 다문화교육 교수·학습·연수 지원
3.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교 입학 등 종합적인 교육 정보 제공
4.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문화교육 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관련 연구·시범 학교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및 일반 학생에 대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기초의회 제·개정 조례



1.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339호, 2015.12.31., 제정]

□ 주요목적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대전광역시 서구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문자해득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이란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구청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교육대상) 성인문해교육 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성차별, 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으로 한다. 이 경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기관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의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 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9.]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104호, 2015.12.29., 제정]

□ 주요목적

서산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을 말한다.
2. “질주(弊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의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관련 자원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331호, 2015.12.31., 제정]

□ 주요목적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복지증진 및 완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4. “기후변화 취약성”이란 사회의 특정한 체제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5. “승용차 요일제”란 군민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승용차가 쉬는 날을 정하여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군민실천운동을 말한다.
6. “에코마일리지 제도”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절약 한데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군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은 군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이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2장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3.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수산업·임업·축산업 등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4.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제7조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조(시행계획 및 결과 공표)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차별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결과 보고서를 공표하고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후변화백서)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기후변화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후변화백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2.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3. 기후변화시책 추진관련 예산집행
4. 그 밖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등

제3장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제11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기후변화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시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후변화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2. 군의회의원
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군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7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등) ①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때에는 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 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등
 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계획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보고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특정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량 감축계획서의 추진상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사업자가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보고서를 평가하고, 배출량 감축 실적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특정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9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등의 공표) 군수는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한 특정사업자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20조(자동차의 사용자제 등) ① 사업자 및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① 자동차운전자는 「전라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 ①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세계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차 없는 날) ①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에코마일리지 제도) ① 군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치

제26조(기후변화 적응대책) 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다양한 환경현상으로부터 군민들의 인적·물적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기후변화영향 조사체계 구축) 군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의 변화상황과 군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영향 조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8조(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군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등

제29조(기후변화 대응연구사업 위탁) ㉠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2. 기후변화 대응시책 개발 및 건의
3.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육성 및 홍보·교육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30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군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민간단체 등이 기후변화 대응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기금의 설치) ㉠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기후변화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기후변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재정지원 등) ㉠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군민·사업자·사회단체 또는 연구 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제정]

□ 제정이유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여성수산인, 벤처수산업, 귀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계조사 결과와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의 조사 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함(제32조).

사. 수산자원·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등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동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수산업·어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수산업·어촌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30.] [법률 제13661호, 2015.12.29., 제정]

□ 제정이유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장애인의 건강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전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전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건강보전관리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함(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보장을 위하여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동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및 제2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1.] [법률 제13603호, 2015.12.22., 제정]

□ 제정이유

현행 환경오염 관리방식은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 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보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을 적용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 따라 분산·중복된 배출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를 이 법에 따른 허가로 통합·간소화하고,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도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기법인 최적가용기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등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고비용·저효율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허가 전 사전협의 제도 마련(제5조)

사업자가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나. 통합허가의 대상 등(제6조)

종전에는 배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통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거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업의 편의를 도모함.

다. 허가기준 등(제7조)

환경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허가기준으로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정함으로써 허가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

라. 허가 후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제9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한 후에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인 환경오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마. 가동개시 신고 등(제12조)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배출시설 등을 가동하기 전에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시운전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바. 최적가용기법의 마련(제24조)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등의 설계, 설치, 운영 등에 관한 환경관리기법 중에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으면서도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기법으로 구성된 최적가용기법을 마련·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4. 주거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78호, 2015.6.22.,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정책도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행복주택·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일 뿐 아니라, 「임대주택법」·「주거급여법」 등 주택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권, 유도주거기준, 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주거기본법」으로 함(제명).

나.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다. 국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제2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는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을 가짐(제3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공공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이 체계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함(제10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제11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음(제15조).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추가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음(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대법원 판례 정보





공직선거법위반 [공2013하,2282]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도2190 판결

【관시사항】

-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의 의미
- [2]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 의 의미
- [3]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취지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 [4]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운영하는 인터넷상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카페 개설을 위한 별도의 준비 모임이나 카페 개설 후 개최한 오프라인 모임이 인터넷상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사조직을 갖춘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 [2]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므로, 비록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
- [3]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다른 선거운동과 달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뿐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허용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 및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는 정치적 공론의 과정에서 기존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인터넷을 통한 정치과정 참여의 기회와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충실한 공론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인터넷상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적극 장려되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과 그 밖의 선거운동은 구분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특성 및 이를 폭넓게 허용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 [4]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하여

별도로 준비 모임을 갖거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 및 그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넘어서서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및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은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인터넷상에 카페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1호 [2]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1호 [3]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87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1호 [4]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87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436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공2011상, 793)
 [2]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공2008상, 543)
 [3]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183, 159)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공2014상,739]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183 판결

【판시사항】

- [1]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2]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의 성질 및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가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2]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각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어느 학생이 시·도를 달리하여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사립학교를 달리하여 전출하는 경우에 학교생활기록의 체계적·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학생이 다른 시·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반영되며,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 학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므로,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

의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사무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이다.

【참조조문】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제2항 [2] 교육기본법 제9조 제4항,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25조, 제47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2조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추42 판결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6년 1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3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